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63

발의연월일: 2022. 8. 30.

발 의 자: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 · 양정숙 · 안규백

오영환 • 이상헌 • 신정훈

이용선 • 민형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 · 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올해 2 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 하려는 것임(안 제167조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7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	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「조세	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	
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	<u>202</u>
<u>2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끝나는	<u> 7년 12월 31일</u>
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	
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	
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	
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	
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	
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	
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	
세율로 한다.	